더샵 검단레이크파크(AB22BL)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AB22BL, AB23BL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00-2857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주택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7.02.)로부터 3년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6.12.(금)	2026.08.07.(금)	2026.08.12.(수)	2026.08.18.(화)	2026.08.19.(수) ~ 2026.08.22.(토) [4일간]	2026.08.23.(일) ~ 2026.08.24.(월) [2일간]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 08. 07.(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15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 06. 12.(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194** 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 08. 12.(수)	2026. 08. 18.(화)	2026. 08. 19.(수) ~ 2026. 08. 22.(토)	2026. 08. 23.(일) ~ 2026. 08. 24.(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796-5번지 일원)**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인천광역시 검단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6. 07. 02.)로부터 3년간** 적용됩니다.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주택법」제5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까지 거주의무 유예가 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아파트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법」제57조의2에 따라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주택법」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으로 부기등기 될 예정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신도시 AB22BL(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69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3개동 총 1,454세대 중 잔여 116세대

■ **입주시기** : 2029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15	01	084.5181A	84A	23	6202	104, 202
					6203	104, 202, 304, 404
					6204	205, 903
					6205	103, 205, 602
					6206	102, 202, 1602, 1605, 2503
					6207	204, 302, 304, 602, 1402
					6208	105, 1603
	02	084.0342B	84B	45	6202	403, 503, 1003, 1503, 1603, 2903
					6203	203, 503, 603, 1103, 1603, 2303, 2603, 2803
					6204	204, 304, 404, 904, 1004, 1304, 1604, 2104, 2404, 2504
					6205	404, 1004, 1104, 1404, 1604, 2104, 2404
					6206	204, 804, 2704
					6207	203, 303, 703
					6208	104, 404, 604, 804, 1004, 1304, 1404, 1704
	03	084.1796C	84C	48	6202	301, 401, 501, 1001, 1601, 1901, 2901
					6203	401, 601, 901, 1301, 2601
					6204	401, 501, 801, 1401, 1501, 1701, 2101, 2501, 2601
					6205	401, 1001, 1701, 2101, 2501
					6206	201, 301, 401, 501, 701, 801, 1201, 1601, 2101, 2201, 2401, 2501
					6207	201, 501, 601, 801, 1001, 1101, 1401, 2001, 2301, 2501
	합 계			116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 라인	층 구분	해당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계약 후 30일이내	2026.12.15.	2027.06.15.	2027.12.15.	2028.08.14.	2029.01.15.	2029.06.15.	입주지정일
84A	23	6202동 2,4호 6203동 2,4호 6204동 2,3,5호 6205동 2,3,5호 6206동 2,3,5호 6207동 2,4호 6208동 3,5호	1층	5	169,278,814	439,221,186	-	608,500,000	10,000,000	5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60,850,000	182,550,000
			2층	6	169,278,814	445,921,186	-	615,200,000	10,000,000	5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184,560,000
			3~4층	4	169,278,814	449,121,186	-	618,400,000	10,000,000	5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61,840,000	185,520,000
			5~6층	2	169,278,814	452,321,186	-	621,600,000	10,000,000	5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62,160,000	186,480,000
			7~9층	1	169,278,814	458,621,186	-	627,900,000	10,000,000	5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62,790,000	188,370,000
			10~15층	1	169,278,814	465,021,186	-	634,300,000	10,000,000	5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63,430,000	190,290,000

			16~20층	3	169,278,814	474,521,186	-	643,800,000	10,000,000	54,380,000	64,380,000	64,380,000	64,380,000	64,380,000	64,380,000	64,380,000	193,140,000
			21층이상	1	169,278,814	484,021,186	-	653,300,000	10,000,000	5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65,330,000	195,990,000
84B	45	6202동 3호 6203동 3호 6204동 4호 6205동 4호 6206동 4호 6207동 3호 6208동 4호	1층	1	168,309,624	433,990,376	-	602,300,000	10,000,000	5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60,230,000	180,690,000
			2층	4	168,309,624	440,590,376	-	608,900,000	10,000,000	50,890,000	60,890,000	60,890,000	60,890,000	60,890,000	60,890,000	60,890,000	182,670,000
			3~4층	6	168,309,624	443,690,376	-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5~6층	4	168,309,624	446,890,376	-	615,200,000	10,000,000	5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61,520,000	184,560,000
			7~9층	4	168,309,624	453,190,376	-	621,500,000	10,000,000	5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62,150,000	186,450,000
			10~15층	11	168,309,624	459,390,376	-	627,700,000	10,000,000	5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62,770,000	188,310,000
			16~20층	5	168,309,624	468,890,376	-	637,200,000	10,000,000	5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63,720,000	191,160,000
			21층이상	10	168,309,624	478,290,376	-	646,600,000	10,000,000	54,660,000	64,660,000	64,660,000	64,660,000	64,660,000	64,660,000	64,660,000	193,980,000
84C	48	6202동 1호 6203동 1호 6204동 1호 6205동 1호 6206동 1호 6207동 1호	2층	2	168,600,842	431,099,158	-	599,700,000	10,000,000	4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59,970,000	179,910,000
			3~4층	7	168,600,842	434,199,158	-	602,800,000	10,000,000	5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60,280,000	180,840,000
			5~6층	6	168,600,842	437,199,158	-	605,800,000	10,000,000	5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60,580,000	181,740,000
			7~9층	5	168,600,842	443,399,158	-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10~15층	9	168,600,842	449,599,158	-	618,200,000	10,000,000	5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61,820,000	185,460,000
			16~20층	6	168,600,842	458,899,158	-	627,500,000	10,000,000	5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62,750,000	188,250,000
			21층이상	13	168,600,842	468,199,158	-	636,800,000	10,000,000	5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63,680,000	191,040,000

■ 공급대금 납부계좌 안내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모계좌]	**우리은행**	**1005-180-206004**	**한국자산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입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가상계좌 사용기간 종료시, 해당 내용 고지 후 상기 모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일
84A	5,458,000	545,800	4,912,200
84B	3,670,000	367,000	3,303,000
84C	4,920,000	492,000	4,428,000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880-206003**	**한국자산신탁(주)**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 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8.18.(화) ~ 2026.08.27.(목)**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8.1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8.23.(일)~2026.08.24.(월) 09:30~17:3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발급)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발급)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포함"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중 세대원이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본인 외 모두 제3자)	○		위임장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 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 호	한국자산신탁㈜	인천검단스카이파크컨소시엄 주식회사	㈜포스코이앤씨
법인등록번호	110111-2196304	134511-0073742	174611-0002979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역삼동, 카이트타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비동 201-2호(동천동, 분당수지U-TOWER)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 관리형 토지신탁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인천검단스카이파크컨소시엄㈜과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1.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2.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수탁자(사업주체)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위탁자와 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의무 및 분양계약자에 대하여 발생할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본 분양목적물은 위탁자가 시행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신탁재산 현금 범위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위탁자 또는 시공사에게 있으며, 본 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내용에 우선합니다.
5.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후를 불문/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 및 위탁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며,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등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6. 분양대금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AB22BL 및 AB23BL)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수탁자는 중도금대출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수탁자와 무관한 분양계약자의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한도초과 등) 또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수탁자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아니하며 분양계약자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해제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8.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사업시행과 관련한 필수적인 계약에 관한 승계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법률상 사업시행자로서 해야하는 형식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분양계약자들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임의로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각종 합의서, 약정서 등은 수탁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9.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이트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관리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00%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6042 (승인번호 : 2025-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더샵검단레이크파크.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796-5번지 일원**

■ **분양문의 : ☎1600-2857**